

폭염시 작업중지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음

1. 관련 기사

- 10.2.(금) 매일노동뉴스, “폭염 작업중지권 실태 모른다는 노동부”

2. 설명 내용

- 정부는 폭염 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「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」을 마련('26.5.12.)하여 노사단체, 지방정부·공공기관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이행을 당부하였음

- * ▲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(5.29.), ▲ 물류·유통업 CSO 간담회(6.2.),
▲ 4대 조선업 CSO 간담회(6.5.), ▲ 항공·항만업 CSO 간담회(6.9.)

[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]

- (체감온도 33℃ 이상, 폭염주의보)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
- (체감온도 35℃ 이상, 폭염경보) 무더위 시간대(14시~17시) 옥외작업 중지
- (체감온도 38℃ 이상, 폭염중대경보)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

- 특히, 폭염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기간('26.7.24.~8.7.)에는 건설 현장 등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중지를 이행하도록 집중점검·지도하였음
 -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6,328개소로부터 작업중지 이행 계획을 제출 받아,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작업중지가 이뤄지도록 관리하고,
 - 소규모 건설현장(50억원 미만)은 민간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, 안전한 일터 지킴이와 협력하여 옥외작업 중지 미이행 사업장 신고체계를 운영하고,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발주·도급하는 사업장에는 옥외작업 중지 협조를 요청하였음

○ 향후, 폭염 작업중지 실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·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년 폭염 대책에 반영하여 운영할 계획임

□ 다만, 「산업안전보건법」상 작업중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지는 조치임을 고려하여 조치 이후 보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작업중지 건수를 통계로 집계하고 있지 않음

담당 부서	산업보건보상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	책임자	팀 장	유종호 (044-202-8890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	박현건 (044-202-8891) 홍남교 (044-202-8895)

